유 학(D-2)

-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 (제외) 다음 대상은 유학 체류자격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
 - i)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 ii)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iii)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직업 훈련과정'
 - iv) 유학 체류자격을 허용*하는 일부 야간 학위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 주간 교육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 전문대학 전공심화 야간과정으로서 관할 출입국관서의 야간 학위과정 사전심사를 거친 교육과정
- O (외국인 유학생) 위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 O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 약 호 | 약 호 | 대 상 자 |
|-------|-------|-----------|
| | D-2-1 | 전문학사과정 |
| | D-2-2 | 학사과정 |
| | D-2-3 | 석사과정 |
| 학위과정 | D-2-4 | 박사과정 |
| (D-2) | D-2-5 | 연구과정 |
| | D-2-6 | 교환학생 |
| | D-2-7 | 일-학습연계 유학 |
| | D-2-8 | 방문학생 |
| 어학연수 | D-4-1 | 한국어 연수 |
| (D-4) | D-4-7 | 외국어 연수 |

1화에 부여할 수 있는 채류기간 상한

2년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일반연수(D-4-2), 취재(D-5) 내지 무역 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 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허가(G-1-6), 방문취업(H-2)자격소지자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D-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학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
 - ※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합법 체류자(체류자격 불문)

-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난민신청자(G-1-5)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하나, 현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활동을 사유로 유학(D-2)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 출국 후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받아 입국 가능
-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협정상 제한이 없는 국가의 경우 별도 허가 없이 연수 및 유학활동 가능. 단, 호주,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홍콩 국민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별도 허가 없이 연수 가능하지만 협정내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 허가 필요

호주: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대만: 지역문화 이해 등을 위한 어학연수 및 세미나를 제외한 정규 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아일랜드: 훈련 또는 학업과정이수불가, 단, 한국어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덴마크: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 캐나다: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내에서 허용, 홍콩: 최장 6개월까지 1개과정 단기연수 수강 가능

체류자격외 활동

1.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으로의 자격외 활동 특례

- O (허가대상)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
 -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i)「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 ii)「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iii)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연구원
 -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KAIST 소속 학생은 현행 규정상 학점취득 등을 위해 소속 대학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이므로 별도 허가가 불필요함
-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 (주의사항) 유학생은 연구자격으로의 자격외활동이 금지되어 있음
 - 학생(D-2)의 일반 기업(대학 산학협력단 포함)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외 활동은 금지되며,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함
 -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됨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가. 기본위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 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호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 등)
-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허가절차】

| 고용계약서 작성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신청 | 허가, 불허 |
|-----------------|--------------|-----------|--------------|
|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 첨부서류, 온라인 |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
|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 담당자가 작성 |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허가서 출력 |

나. 대 상

- O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D-2-4, D-2-6, D-2-7 해당자
 - 어학연수(D-4-1, D-4-7)자격 및 방문학생(D-2-8)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의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다. 허용범위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시간('23. 7. 시행)>

| -1-1 | 하 | 한국어 능력 기준 | | 시작 | 허용 | 시간 | 인증대학· 성적우수, |
|--------------------|-----|--|----------------------|----------|-----------------|------------|----------------|
| 과정 | 학면 |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 ③세종학당 | 、(2)사외종입프도그넴, I II 🕕 | | 주중 | 주말병학 | 항국어우수 (주중) |
| | | ① 2급 | Х | 6개월 | 10 ⁷ | 시 간 | 10시간 |
| 어학 연수 | - | 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 0 | 이후 가능 | 20시간 | | 25시간 |
| 전문 | | ① 3급 | Χ | 즉시 | 107 | 시간 | 10시간 |
| 학사 | - |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 0 | 가능 | 25시간 | 무제한 | 30시간 |
| | 1~2 | 사전평가 61점 이상 | Χ | 즉시 | 107 | 시간 | 10시간 |
| 학사 | 학년 | ③ 중급1 이상 이수 | 0 | 가능 | 25시간 | 무제한 | 30시간 |
| 박사 | 3~4 | ① 4급 | Χ | 즉시 | 107 | 시간 | 10시간 |
| | 학년 |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 0 | 가능 | 25시간 | 무제한 | 30시간 |
| 석·박사 | | 사전평가 81점 이상 | Χ | 즉시 | 15 ⁷ | 시간 | 15시간 |
| | - | ③ 중급2 이상 이수 | 0 | 가능 | 30시간 | 무제한 | 35시간 |

※ 영어트랙 과정: 학년에 관계 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 목차체류자격외활동

□ 목차체류자격외활동

<허용분야(예시)>

- O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O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 제한 ※ 단,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O 방학기간 중 학위과정(D-2)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단,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소변경> :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 기준 등>

- O 제한대상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미만이면 제한)
 - 불성실 신고자 : 시간제 취업허기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 (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내부기준)
 - 직종제한 : E-1 ~ E-7 전문분야, E-9, E-10 비전문분야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시간제취업활동 제한(단, 영어키즈키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회화지도(E-2) 활동은 제외)을 하려는 사람이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 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결과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형태 제한
 - ①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 ②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③ 원거리 근무(거주, 대학 소재 기준 1시간 이상 거리)
- * 수도권 최대 90분, 지방 최대 60분 이내 거리를 적정 거리로 간주 (학기 중)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심사 / (방학) 대학 소재지 또는 체류지 기준으로 심사

○ 처리요령

- 어학연수생(D4):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장소 1곳 한정
- 유학생(D-2):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 2곳으로 한정

라. 신청서류

- O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O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붙임3),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이 될 경우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붙임4)

마.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바.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명령, 입국규제는 유예

사.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 활동

- O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 i)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면제
 - ii)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 i)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 ii)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E-3) 필요

□ 목차체류자격의활동

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른 현장실습 활동

O (대상활동)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제2조에서 규정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및 동 고시 제3조에서 규정 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 교육과정'은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단, 자율 현장실습은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3. 유학생(D-2) 배우자의 취업활동 허가

○ 외국인의 취업 허용 업종에 대해 자격외활동허가 후 취업(단순 노무 직종은 자격외 활동 제한)

○ 해당사항 없음

<u>근무처의</u> 변경·추가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시행규칙 제49조의 2)

체류자격 부 여

O 해당사항 없음

<u>체류자격</u> 변경허가

1.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 가. (기본원칙)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용
 - ① 등록외국인중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 취업(E-10), 인도적체류허가자(G-1-6)를 제외한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 ② 단, ^①단기 합법체류자로서 ^②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 진학 예정 교육과정의 개강이 예정되어 있으며, ^③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예외적으로 허용

<단기 체류자격 소지자 유학 자격변경 일람표>

| 현 ^첫 | 베류자격 | | 국적 | 일반국가 | 고시 21개 국가 + 중점관리 5개 국가 |
|----------------|------------|----------------------|------|------|---------------------------|
| | B1/ B2 | | | 0 | × |
| ГЬ | 단 기 (2) | C31/C34 | 인증대 | 0 | ×('19.6.11 변경) |
| 딘 기 | | | 비인증대 | 0 | × |
| /I C-3 | C-3 | C38 | | 0 | 0 |
| | | C32~C33/C35~7,C39~10 | | × | × |

나. 허가권한 : 체류지 관할 또는 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④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⑥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u>원본 심사를 원칙. 다만, 학위 등 인증보고서</u> 등은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인정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

- 일반국가

O 아래 표에서 정한 방식의 학력증명서를 ^①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또는 ^②영사(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목차

<u>체류자격</u> 변경허가

| 구 분 | | | 제 출 서 류 |
|------|--------------------------|------|--|
| 어학 | 연수(D-4-1) | 과정 | 고교 졸업 이상 학력 증명서 |
| | | 전문학사 | 고교 졸업증명서 |
| | 신입학 | 학사 | TH 2800M |
| | (D-2-1~ D-2-4) | 석사 | 학사 졸업증명서 |
| | | 박사 | 석사 졸업증명서 |
| | | 전문학사 | 고교 졸업증명서 + (전문)학사 재학(졸업)증명서 |
| | 편입학 (D-2-1~ D-2-4) | 학사 | ①고교 졸업증명서 + 학사 재학증명서 또는 ②(전문)학사 졸업증명서 |
| 하이고저 | | 석사 | 학사 졸업증명서 + 석사 재학(졸업)증명서 |
| 학위과정 | | 박사 | 석사 졸업증명서 + 박사 재학(졸업)증명서 |
| | 교환학생 (D-2-6) | 전문학사 | 해외 전문학사 재학증명서 |
| | | 학사 | 해외 (전문)학사 재학증명서 |
| | | 석사 | 해외 석사 재학증명서 |
| | | 박사 | 해외 박사 재학증명서 |
| | 방문학생 | 전문학사 | 고교 졸업증명서 + 해외 전문학사 재학증명서 |
| | (D-2-8) | 학사 | 고교 졸업증명서 + 해외 (전문)학사 재학증명서 |
| | | 석사 | 해외 석사 재학증명서 |

| | 박사 | 해외 박사 재학증명서 |
|-----------------|----|----------------|
| 연구유학 (D-2-5) | - | 석사 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

- 중국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학위 과정별로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 보고서를 아래 표에서 정한대로 제출

| 구 분 | | 입 증 내 용 | 제 출 서 류 (아래 서류 외 불인정) |
|-------------------|----------------|--|---|
| 어학연수(과정 | 4 | 고교 졸업 이상 학력 | |
| 신입학 | 전문 학사 학사 | 고교 졸업 사실 | |
| (D-2-1~ D-2-4) | 석사 | 학사 졸업 사실 | |
| | 박사 | 석사 졸업 사실 | |
| | 전문 학사 | 고교 졸업 사실 + 전문학사 재학(졸업) 사실 | ◇ 일반고 학력 |
| 편입학 (D-2-1~ | 학사 | 고교 졸업 사실+학사 재학(졸업) 사실 또는 전문학사 졸업 사실 | - (졸업) CHSI(学信网) ◇ 전문학사 학력 |
| D-2-4) | 석사 | 학사 졸업 사실 + 석사 재학(졸업) 사실 | (재학) CHSI(学信网)(졸업) CHSI(学信网) |
| | 박사 | 석사 졸업 사실 + 박사 재학(졸업) 사실 | ◇ 학사 이상 학력 |
| | 전문 학사 | 중국 전문학사 재학 사실 | - (재학) CHSI(学信网) - (졸업) CHSI(学信网) 또는 CDGDC(学位网) |
| 교환학생 | 학사 | 중국 학사 재학 사실 | 工厂 CDGDC(子匠M) |
| (D-2-6) | 석사 | 중국 석사 재학 사실 | |
| | 박사 | 중국 박사 재학 사실 | |
| | 전문 학사 | 고교 졸업 사실+ 중국 전문학사 재학 사실 | |
| 방문학생 | 학사 | 고교 졸업 사실 + 중국 학사 재학 사실 | |
| (D-2-8) | 석사 | 중국 석사 재학 사실 | |
| | 박사 | 중국 박사 재학 사실 | |

<u> 목차</u>

| 연구유학 | 석사 학위 이상 취득 사실 | |
|---------|----------------|--|
| (D-2-5) | 국사 국자 약이 지구 사람 | |

○ 단,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등직업학교 등 졸업자(학력인정기관 졸업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심사 자료 제출

| 구 분 | | 심 사 기 준 | 비고 |
|------------------|---|--|-----|
| 중 등 전 하 교 | 보통중등전문학교 (普通中专) Regular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 직업고등학교 (职业高中) Vocational High Schools 성인중등전문학교 (成人中专) Adult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 | ① 온라인 발행 i)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 주중한국영사 확인 필요 * 온라인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오프라인 발행 ('학교정보확인서(붙임6)' 제출 필수) i)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 주중한국영사 확인 필요 ii)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성교육청(시교육국) 확인 + 주중한국영사확인 필요 | 택 1 |
| | 기술공업학교 (技工学校) Skilled Workers Schools |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hrss.gov.cn/)온라인 조회본 + 주중한국 영사확인 * 온라인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 |
| 기타 고졸학력 인정 학교 | |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주중한국영사확인 ※ 설립허가증(사업단위법인증서(事业单位法人证书) 또는 민판학교판학허가증(民办学校办学许可证)) 사본 제출 필수(단, 학력교육 과정만 인정, 공증불필요) | |

- ⑦ 재정능력 입증서류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베트남의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 증명서

| ਹੀ ਨੀ ਸੀ | |
|-------------|--------------------------------------|
| 과정별 제출서류 | |
| | -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 | ※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 | 시행령」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
| 특정 연구과정 | 본국 학사과정 재학 중인 경우에도 연구과정 유학(D-2-5) 인정 |
| (D-2-5) | - 신원보증서 또는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
| | 지급 확인서 등) |
| | -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붙임2) |
| 교환학생 | - 소속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

(D-2-6)

-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 **1학기 이상을 외국 정규대학에서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2. 하위대학 어학(한국어, 영어)능력 요건 특례

- (적용 대상) 하위대학의 입학생(D-2-1~D-2-8)으로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에게 적용
- O 한국어 능력
 - (전문대학) ^①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61점 이상 취득, ^③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 과정 이상 이수
 - (대학·대학원) ^①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시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③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 과정 이상 이수
 - (교환학생) 학위과정 구분에 관계없이 ^①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41점 이상 취득, ^③세종 학당 한국어 초급2 과정 이상 이수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단계 완화된 기준 적용
 - ▶ ^①동일대학 상급 과정으로 진학하는 유학생, ^②전문학사 과정의 뿌리 산업양성학과 유학생, ^③학사 이상 과정의 예체능 학과 유학생

O 영어 능력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모집 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입학 시 '영어 능력'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과정으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는 학사 단위를 의미
-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단, 영어 공용어 국가 국민의 경우 이수한 교육과정이 영어 과정인 경우에만 인정)

체류기간 가. 기본원칙

연장허가

학사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 O 유학 자격 (D-2-1 내지 D-2-4, D-2-7)
 - 외국인등록: 다음년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 변경·연장 시: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 연구유학 자격(D-2-5)
 - 연구유학생은 2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1년)
- O 교환학생(D-2-6) 및 방문학생(D-2-8) 자격
 - 외국인등록 및 변경·연장: 해당 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1월 말, 7월말로 조정하여 허가

가사, 졸업연기 등을 위한 휴학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휴학)자는 체류 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학교 변경 및 하위 과정 이동 허용 특례(학위과정 유학생에 한함)

- O (학교변경) 동급 학위과정의 학교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교 변경 제한
- ▶ 「출입국관리법」제18조 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기존 학교 수학기간과 변경된 학교의 수학 예정기간의 합산 기간이 해당 학위과정별 최대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자
- (하위 학위과정 이동) 재학 중인 대학을 졸업(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하위 학위과정(동급 학위과정 이동 포함) 이동하더라도 현 체류자격의 총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하지 않고 졸업 가능한 사람이 아래 전공에 해당 하는 전공학과로의 하위 학위과정(동급 학위과정 이동 포함) 허용

<외국인 유학생(D-2) 하위 학위과정 이동 허용 전공>

| 대분류 | 소분류 | 주요 관련학과(예시) |
|------|------------------------------------|--|
| 이공계열 | IT·전기· 전자·기계 컴퓨터·통신· 정보보안 | AI컴퓨터정보과, AI반도체융합과, 전기과, 전자과, 전 기공학과, 정보통신과, 반도체전자과, 정보보안과, 디 스플레이전자공학과, 사이버보안과, 컴퓨터정보 등 |
| | AI·로봇·자동 차·조선비행 드론·철도 | Al융합기계과, 기계자동차과, 자동차로봇학과, 조선기 계공학과, 항공전자정비과, 드론기계과, 항공정비기술 학과, 철도전기과, 철도건설과 등 |

| | 공학 | |
|--------------|---------------|--|
| | 생명환경 | |
| | 화학·과학 | 바이오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과학과, 생명화공과, 보건환 |
| | 에너지· | 경과, 환경안전보건과, 에너지신소재과, 화학에너지공학 |
| | 산업안전 | 과, 신재생에너지전기과 등 |
| | 공학 | |
| 산업인력 | 농축산· 어업 | 스마트팜도시농업과, 스마트귀농귀촌학과, 과수학과, 식량작물학과, 가축학과, 축산과, 마축자원학과, 산림조 경학과, 스마트해양양식과 등 |
| 부족직군 관련분야 | 건설·제조 | 건설환경과, 토목건설과, 특수건설기계과, 건설정보과, 스마트기계융합과, 3D프린팅금형학과 등 |
| | 뿌리산업·조 선해양 | 제철산업과, 제철금속과, 금형설계과, 재료공학과, 조선기 술과, 조선기계공학과 등 |
| | 돌봄 요양 | |
| 노인돌봄 | 케어 | 노인복지과, 실버복지과, 휴먼복지과, 사회복지과, 휴먼복지서 |
| 관련분야 | 실버·의료서 | 비스과, 노인보건복지과 등 |
| | 비스 | |
| K-CULTURE | K-Pop· | 케이팝과, 케이연극영화뮤지컬과, 케이뷰티과, 케이팝뮤 |
| | K-Beauty | 직프로덕션과, 뷰티코디네이터과, 한복문화컨텐츠과, 글 |
| 문화예술 | K-Food- | 로벌푸드매니지먼트과, 글로벌한국문화과, 디지털문화 |
| 관련분야 | 한국문화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자제한대학, 어학연수과정 유학생은 상기 특례 미적용

졸업요건 미충족 등에 따른 특례 연장 허용 상한

- 전문학사: 입학 후 최대 3년(단, 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최대 4년)
- 학사: 입학 후 최대 6년(단, 5년제 학사의 경우 최대 7년)
- 석사: 입학 후 최대 5년(단, 3년제 석사의 경우 최대 6년)
- 박사: 입학 후 최대 8년(단, 2년제 박사의 경우 최대 7년)

나.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O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붙임1)
- O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 O 재정입증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그 목차

-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 단,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등록을 필한 외국인유학생(D-2)이 1년 이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복수재입국 허가하고, 재입국허가 수수료 징구

그 목차

- 허가기간은 2년 부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년 미만인 경우 잔여 체류기 간 범위 내에서 부여

외국인등록

1.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 (연구생)증명서, 수수료
-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에 한함)
 - 기존 유학지침의 적용유예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결핵 검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16.7.1. 이전 사증발급 자에 한함
- 체류지 입증서류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가. 신고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 O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O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O 학교 변경 (명칭 변경 포함)
-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다. 신고장소 :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온라인 신청
-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성명 등 인적사항 변경 시)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
 - (여권정보 변경 시)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
 - (학교변경 시)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 (해당자), 학교변경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함을 증빙하는 서류 해당자)
 - (학교명칭 변경 시) 고유번호증 등 학교 명칭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

외국인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

1. 학교의 장의 의무 (법 제19조의 4)

- 가. 담당직원 지정 및 통보
 - O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 교체 시에도 즉시 교체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 대학소재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서 처리 원칙, 분교는 분교소재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 O 통보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을 통한 지정 또는 변경된 담당직원 통보 (등재)

나. 외국인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신고

-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시 아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①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등록기한의 다음 날
 - ② 휴학한 경우 : 휴학일
 - ③ 제적 또는 유학이나 연수를 중단시킨 경우 : 제적하거나 유학이나 연수를 중단시킨 날
 - ④ 행방불명, 학교장이 알지 못하는 사유로 유학/연수가 중단된 경우 : 행방불명 등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
- 신고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연수(유학)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다.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및 상담

<외국인유학생의 학사정보 · 현황의 관리 및 통보>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각종 학사정보를 관리하고, 그 정보를 매 학기 시작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통보(등재)하 여야 함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정별 (전문학사, 학사 등), 유학중단 사유별 (미등록, 자퇴, 휴학, 제적 등) 등의 현황을 매년 2월·5월·8월·11월 말일까지 (연 4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통보방식 : 유학생정보관리시스템 (FIMS)에 학사정보 및 현황 통보 (등재)

<외국인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 및 현황 통보>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에 대해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상담현황을 유지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함

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수정 및 삭제 등

가.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그 목차

외국인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

○ 사증, 시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변경 등의 업무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는 원칙적으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을 통해 확인할 것

나. 표준입학허가서 수정 및 삭제

- 학교 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표준입학허가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된 후에는 학교 담당자가 수정 및 삭제할 수 없음
-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된 후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관할 청 (사무소·출장소) 담당자는 수정 또는 삭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함

붙임 1

논문지도·졸업시험·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 논문지 | 도·졸업시험 | ·학점취득 일정에 |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 | |
|---|---|---------------|---------------------|--|--|
| | 성 명 | | 국 적 | | |
| | 외국인 등록번호 | | 과정명 (학사, 석사, 박사) | | |
| 대상자 | 학과(전공) | | 졸업학점 (평점) | | |
| | 입학일자 | | 수료일자 | | |
| | 전화번호 | | e-mail | | |
| | 일 정 | 7 | 기도 내용 | | |
| | | | | | |
| | | | | | |
| 논문지도 | | | | | |
| 일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학생은 수료 후 본인의 지도하에 상기와 같이 <u>학위 논문 작성·졸업시험 준비·</u> | | | | | |
| <u>졸업을</u> - | <u>졸업을 위한 학점 취득 과정(택1)</u> 중에 있음을 확인하며, 위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 | | | | |
| 있도록 쳐 | 세류기간 연장을 허 |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20 | | | |
| 지도 | 소속 및 직위 | | | | |
| 교수 | 성 명 | (인 또는 | 서명) 연락처 | | |
| (확인) | 소속 및 직위 | | | | |
| 유학담 당자 | 성 명 | (인 또는 | 서명) 연락처 | | |
| | · 출인구 | · 외국이청(사무/ | 소·축장소)장 귀하 | | |

붙임 2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 | |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연구생 | 국 적 | | 출신대학명 | | |
| 인적사항 | 학 위 | 석사 / 박사 (기타:) | 전 공 | | |
| | 전화번호 | | e-mail | | |
| | 연구주관 (성 격) 연구과제 | 예시) 교육부 위탁, 산업부 위탁 등 | 주관부서 | | |
| | 연구파세 (담당분야) | | | | |
| | 연구 일정 | ※ 연구과제 및 연구일정은 | 별지로 작성하여 첨 | 부 가능 | |
| | 국내체재비 | 자 비 | | | |
| 연구과정 | (증빙서류 첨부 | ※ 잔고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 | |
| | 필요) | 연구수당 | 월 (|)원 | |
| | 동 반 자 | 유 / 무 | | 명 | |
| | | 성 명 | | | |
| | 연구책임자 | 소속 및 직위 | | | |
| | | (연락처) | | | |
| 위 연구생은 | 은 상기와 같이 (|) 과정을 연구 중(여 | 예정)임을 확인합니 | 니다. | |
| | | 20 | | \neg | |
| | | ○ ○ 대학교 총 | 장 직인 | | |
| | 주 소 | | | | |
| 연구책임자 | 소속 및 직위 | | | |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형) 연락처 | | |
| 유학생 | 소속 및 직위 | | | | |
| 담당자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형) 연락처 | | |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주의) 대학 총장 직인 날인 시에만 유효하며, 연구유학(D-2-5)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붙임 3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대학작성 확인서 (한글)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 | | | | | |
|---------------------------------|------------------------|----------|---------------|-------|-----------|-----------------------|
| | 성 명 | | 외 국 인 등록번호 | | | |
| 대상자 | 학과(전공) | | | 이수현 | 각기 | |
| | 전화번호 | | | e-m | ail | |
| | 업 체 명 | | | | | |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 | 업종 | |
| 취업 | 주 소 | | | | | |
| 예정 근무처 | 고용주 | | (인 또는 서) | 명) | 전화 번호 | |
| | 취업기간 | | | | 급여 시급) | |
| | 근무시간 | 평일 : | | · | 토·일 | 요일 : |
| 위 유학 | 학생은 본교에 | 재학하고 있는 | 학생으로서 현 | 현재의 형 | 학습 및 | 연구 상황으로 볼 때, |
| 상기 예기 | 정된 시간제취 | 업 활동을 통해 | 서는 학업(또는 | 는 연구 | 활동)어 |] 지장이 없을 것으로 |
| 판단되므 | .로, 이에 확인 |]합니다. | | | | |
| w 1=1: | מו בו בו בו בו | | 20 | | -1-1-1 A | 7-1 00 1-1 11 11/41 7 |
| | | | | | 구과성은 | 주당 20시간 이내(인증 |
| 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 | | | | | | |
| ○ ○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 귀하 | | | | | | |
| | 소속 | | 대학 | | | |
| 유학생담' 확인린 | I 44- | | 비해당□ | 성명 | | (인 또는 서명) |
| 766 | 직위 (연락 [;] | H) | | | | |

붙임 4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고용주작성 확인서 (한글)

※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주가 작성

| | 외국인유 | 우학생 | 시간제취업 | 요 | 건 준수 | 확인서 |
|-----------------|---------------------|------|-----------|---|---------------|-----|
| 대상자 | 성 명 | | | | 외 국 인 등록번호 | |
| | 취업기간 | | | | 급여 (시급) | |
| | 근무시간 | 평일 : | 일: 토・일요일: | | | |
| | 근무내용 (구체적 기재) | | | | | |
| | 업 체 명 | | | | | |
| 취업 예정 근무처 | 사 업 자 등록번호 | | | | 업종 | |
| | 고 용 주 성 명 | | | | 전화 번호 | |

위 유학생을 시간제 취업으로 고용함에 있어 위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며, 제조업, 건설업 등 허가된 이외의 업종에 근로하게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고용주 성명 :

(서명)

※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 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붙임: 고용주 신분증 사본 1부.

번역자 확인서

번역자 확인서

| 번역자 | 이전 | 사항 |
|-------------|-----|----|
| 1. 1. 1 | انا | |

| 국 적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성 별 | |
| 연 락 처 | |
| 주 소 | |

□ 번역대상(내용)의 명의인 인적사항

| 국 적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성 별 | |
| | |

| 번역대상(내용) | |
|----------|--|

첨부한 번역 내용은 원본의 문구에 맞게 사실대로 번역하였으며,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번역자: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

- ▶ 외국어의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 ▶ 단기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은 번역자 자격이 없습니다.
- ▶ 행정사법에 따라 민원인의 위촉에 의하여 업(業)으로서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어번역행정사에 한합니다.

붙임 6

중국 중등직업학교 학교정보확인서

| | 학교 경 | 영보 확인서 学校信息确认书 | | |
|---------------|------------------------------------|--|--|--|
| | 성 명 姓 名 | 생년월일 出生日期 | | |
| 유 학 생 인적사항 | 국 적 国 籍 | 여권번호 护照号码 | | |
| 留学生 个人信息 | 진학 예정 대학 拟入学大学名称 | 전공명 专业名称 | | |
| | 전화번호 联系电话 | e-mail 电子邮箱 | | |
| | 졸업학교명 (졸업일) 毕业学校名称 (毕业日期) | (졸업일 毕业日期:2022) | | |
| | 학교유형 学校类型 | 보통중등전문학교 普通中专() 직업고등학교 职业高中() 성인중등전문학교 成人中专() 기타 其他() | | |
| 학교정보 学校信息 | │ | | | |
| | 소재지 学校地址 | | | |
| | 전화번호 学校电话 | | | |
| | 喜페이지 学校官网 | | | |
| 교 직 원 | 소속 및 직위 | | | |
| 연락정보 | 所属部门及职位 | | | |
| 教职工 联系信息 | 성 명 姓 名 |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盖章或签名) 联系电话 | | |

본인은 상기 학교 정보 등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本人保证,以上所填写的学校信息等内容均属实。本人理解,以上信息如有虚假,可能会受到韩国相关法律法规的处罚。特此确认。

20 . .

유학생 본인 留学生本人 (서명 签名)

* 2부 작성 후 교육기관 및 재외공관에 각각 제출 本确认书需要一式两份。一份交拟入学大学,一份交韩国驻外使领馆。

-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 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3)의 생산직 직원 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4)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5)
-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6)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7)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8)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합작투자법인이나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3월 이내에 정상 가동될 것이 인정되고** 정상 가동을 위하여 연수받은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6) 기술수출은 연수를 받을 1개의 기술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기간 동안 기술수출금액 10만불 이상에 해당 되어야 하며,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개의 기술을 각 10만불 이상 수출한 경우에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 출한 기술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7) 기술제휴란 일정한 특허료를 대가로 하여 특정의 특허기술을 상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 특허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협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 8) 「대외무역법」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액수가 미화 50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플랜트의 개념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된 것에 한함. 또한 플랜트는 연수를 받을 1개의 설비를 기준으로 50만불에 해당되어야 하고, 동일한 설비라면 여러 개를 수출하여 50만불이 되는 경우일지라도 관계없음(다만,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종류의 플랜트를 각 50만불 이상 수출하였더라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플랜트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9) 가동에 필요한 플랜트·기계 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요 임원 및 간부가 임명되어 있으며, 법인(공장) 설립허가를 받았지만 기업의 가동에 필요한 전문 또는 숙련인력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는 등 국내 기술연수 업체에서 사전 연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함(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해외현지법인 설립허가 또는 인가서, 해외현지법인의 주요 임원 및 사원 명단, 설치된 플랜트·기계의 종류, 공장이 가동되

³⁾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8 조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국내 산업체를 의미함

^{4) &}quot;해외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란 해외기업에 해당 기술을 교육시킬 숙련공 또는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해외기업에 해당 기술을 연수시킬 기계 또는 플랜트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입국목적이 명확한 경우 생산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술연수도 포함(사례: 해외 생산공 장은 부재하나 현지 법인에서 국내 상품의 AS를 위한 기술연수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⁵⁾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각 해외기업별로 필요한 연수허용인원을 고려 하여 연수허용인원을 결정하되, 총 연수허용인원은 직접투자한 해외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모두 갖춘 핵심기능 인력에 한하여 정상 가동 전10)이라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연수허용인원 기준)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 외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11).

- 1. 유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증 또는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③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미화 10만불 미만 인 기술연수업체에 최초로 외국인 기술연수생 연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 에는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3조(연수생 요건) 기술연수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2)

- 1.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일 것
- 2. 현지 법인의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능인력은 제외)
- 3. 과거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한 경우 출국한지 1년 이상일 것
- 4.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2급 이상 취득 또는 세종학당재단의 세종학당 초급2 이상 과정을 수료할 것 (다만, "국내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기술연수생 100명당 1

지 못하는 이유, 사업계획서, 사전연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사유서, 해외기업의 출자규모 및 생산직근로자 수, 정상 가동 전까지 생산직 직원 채용 계획 등 관련 소명 자료를 연수업체로 하여금 제출토록 할 것)

¹⁰⁾ 정상가동기간(3개월)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로부터 계산함

¹¹⁾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사전연수 인정여부 및 총 연수허용인원의 30% 이내에서 몇 %(명)의 연수생의 사전 연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상신할 것(※ 사전연수허용 이후에 추가로 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정상으로 가동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총 연수 허용인원에서 사전연수허용인원을 제외한 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 연수를 허용할 것)

¹²⁾ 시행령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기술연수 제한대상 외국인은 아래와 같음

[○] 대한민국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mark>선고</mark>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o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mark>사람</mark>

[○]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mark>사람</mark>

[○] 불법취업<mark>할</mark>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mark>다고 인정되는 사람</mark>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명 이상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13)하고 기술연수생이 입국한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14)' 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외)

제4조(연수허용인원 기준) ① 기술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 기준은 다음 과 같다.

- 1. 내국인 상시 근로자¹⁵⁾(임시직 및 기술연수생 제외) 총수의 8% 이내 ¹⁶⁾ 단,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200명 초과시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 2. <삭 제>
- 3. 외국국적 동포17)를 기술연수생으로 초청하는 경우
 - : 제1호의 허용인원 외에 외국국적동포 기술연수생 수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단, 총 초과허용인원은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 의 50%를 초과하지 못함)¹⁸⁾

¹³⁾ 통역요원은 기술연수생의 국적국 언어 및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연수생이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통역이 가능하도록 상시 배치하여야 함. 통역요원의 한국어 능력 요건은 외국인(귀화한 국민 포함)의 경우 토픽 4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법무부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로 한정하며, 국민인 경우 해당 외국어 능력 시험 중급 자격증 또는 해당국가에 3년 이상(연수 업체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 해외법인의 기술 및 생산 관리 인력으로 파견 주재한 경우 2년 이상) 체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정, 국적국 언어가 아닌 영어통역을 하는 경우 해당 연수생 모두의 영어회화 능력(TOEIC 700 이상)을 입증해야 함

^{14) &#}x27;한국어교육 이행각서'는 별도 서식은 없으나, "기술연수생 100명당 o명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기술연수생이 입국한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본 기술연수업체가 초청하고자 하는 기술연수생에 대해 한국어시험성적 제출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시험 성적제출 의무를 면제받은 기술연수생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됨은 물론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추가 초청불허 및 추후에 초청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한국말시험성적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입니다."라는 문구와 "기술연수업체의 장의 서명"은 반드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에 기재해야 함

¹⁵⁾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피보험자를 의미하며 고용노동부 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¹⁶⁾ 연수허용인원 계산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절삭함

¹⁷⁾ 외국국적동포의 정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름

¹⁸⁾ 예를 들어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해 연수허용인원이 10명이고, 이중 외국국적동포가 6명이라면 3명의 연수생을 더 초청하여 총 13명을 할 수 있음. 또한, 외국국적동포 수와 관계없이 추가로 초청할 수 있는 총 인원은 동 제1호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 10명의 50%(5명)을 즉 1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4. 연수생 관리 우수업체19)에서 기술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 :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
- ② <삭제>
- ③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기준을 초과하여 연수인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²⁰). 다만, 이 경우 연수허용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목적을 달리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도 그 기술 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연수생의 총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 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²¹)
- 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연수생 관리가 부실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초청한 기술연수생의 10% 이상 (단, 이탈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연수 장소를 이탈한 업체에 대하여 이탈 기술연수생 수를 연수허용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22) 다만, 기술연수업체가 이탈한 연수생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제19조 및 동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연수생 이탈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등 연수생 이탈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이탈연수생의 소재지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이탈연수생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탈연수생의 출국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기술연수업체가 소재지를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연수허용

¹⁹⁾ 연수생 관리 우수업체는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①3회 이상 연수생을 초청하고 ②초청한 연수생 중 이탈자가 없으며 ③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업체를 말함(각 요건 충족)

²⁰⁾ 초과인원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를 기준으로 ①연수업체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수의 총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인 경우, ②해외현지법인의 총 출자총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③해외현지법인의 매출규모가 미화 5,000만불이고 그 해외기업의 생산직 직원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와 같이 해외기업 규모를 볼 때 많은 기능공이 필요하여 국내연수허용인원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초과인원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 허가 사유 및 적절한 허가인원을 검토하여 승인 상신할 것)

²¹⁾ 한 기술연수업체가 해외직접투자, 기술투자, 플랜트수출 중 두 가지 이상을 하였거나 초청한 연수생들에게 각각 다른 기술을 연수시키더라도 국내 총 연수허용인원은 제4조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²²⁾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 이탈한 수를 공제

인원은 **연수실시 사업장 단위별**(사업자등록 기준)로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²³).

⑦ 수개의 국내산업체가 해외에 합작으로 투자한 경우에 총 연수허용인원은 국내사업체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허용인원 내에서 투자업체별로 기술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²⁴). 다만, 동일 분야²⁵)에 대하여는 1개 업체에 대하여만 연수를 허용한다.

제5조(연수기간) ① <삭제>

- ②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기술연수생이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26)하고자 할

²³⁾ 본사에서 직접투자, 플랜트·기술수출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사에서 연수를 시켜야 하지만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사에서 연수를 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사에서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음(본사에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 지사에 연수생을 배정해서는 안 됨). 동 규정은 이 경우를 대비하여 둔 규정으로서 기술연수업체가 2개 이상의 소재지에 지사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기술연수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사들은 예외적으로 각각 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각 지사별 연수 허용인원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해 각 지사별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집

²⁴⁾ 수개의 기업(※지사는 모회사와 동일한 산업체에 속하므로 모회사와 동일한 기업으로 보아야 하나 자회사 및 계열회사는 다른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모회사와 다른 기업으로 볼 것)이 해외 현지법인에 합작 투자한 후 각각 기술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국내 연수업체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일괄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신청을 접수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업체별로 배분한 기술연수생 수가 업체별 연수허용인원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체별로 배분한 기술연수생 수를 합한 인원이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체의 연수허용인원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여부, 제4조제7항 단서 규정에 의해 1개 업체에서만 연수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여부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는 경우 관할지역 밖에 소재한 연수업체에 배정될 연수생에 대해서는 관련 신청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이첩함(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 연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수생 보호·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임)

²⁵⁾ 동일 분야란 동일한 기술·기능을 의미함

²⁶⁾ 체류기간 연장은 연수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과거 이탈율, 외국인의 범법사항을 확인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가하며 체류기간 연장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1.}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도서식)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해당자만 제출)

경우 그가 연수받고 있는 연수업체의 장이 서명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첨1)"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연수비율) 기술연수생의 실무연수27)비율은 전체연수시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및 접수) ① 기술연수생을 초청하고 자 하는 산업체의 장(이하, "초청자"라 한다)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28)하여 그 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

- 4.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 5.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 서류
 - 영업활동에 따른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
 - 각종공과금 납입영수증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세, 토지세 중 1)
- 6. 연수생 임금 및 연수수당 지급 여부 확인서류
 -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연수생 임금대장(최근 1개월분)
 - 국내기업에서 지급한 연수수당 지급 대장
- 7. 제12조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용 연수활동 입증서류(연수실적평가서류)
 - 연수일지, 면담일지, 한국어 교육 일지(해당자만 제출)
- 8. 신원보증서 원본
- 9.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류
- 10.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 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27) 실무연수란 판매용 제품이나 부품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 기술기능 또는 지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함(판매할 목적이 아닌 견습용 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면서 실습교육을 받는 것은 실무연수가 아님)
- 28) 신청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음
 -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2.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①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영사확인 必)
 - ②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영사확인 必)
 - ③ 한국어능력입증자료
 - 3.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
 - 4.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피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신원보증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피초청자명 단"을 첨부하여 한 장만 작성)
 - 5.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① 해외직접투자산업체의 경우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원행원본 대조필)
 - (현금투자 시) 송금영수증 또는 송금사실확인서(원본 또는 은행 원본 대조필)
 - (현물투자 시) 세관 발행 "수출면장" 확인(승인번호란의 투자인증 번호 확인)
 - ※ 해외투자신고수리액 중 미투자분이 있는 경우 미투자분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서 추가 제출

별첨 1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가. 제출 대상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시증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나. 제출 범위

- 국적국
- 제3국 (단, 신청일 기준 <u>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u>한 경우에 한함)

다. 면제 대상

공통사항

- O 만 14세 미만인 사람
- O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O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O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 람
 - * 면제대상 포함
- O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 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함)

방문취업(H-2)

- O 만 60세 이상인 사람
-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⁵⁵⁾와 유족 또는 가족⁵⁶⁾
- O 방문취업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사증 신청자 중 완전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외동포(F-4)

- O 만 60세 이상인 사람
-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영 주(F-5)

- O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면제대상 포함
-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음 어느 하나로 영주자격(F-5)을 신청하는 사람
 -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특별공로자로 동포영주(F-5-7)를 신청하는 사람

^{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국가(독립) 유공자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특별귀화 대상자와 상이함을 주의)

^{、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유족 또는 기족의 범위 준용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항의 특별귀화 대상자와 상이함을 주의)

라. 범죄경력증명서 요건

1. 발급기관 및 내용

- O 제출 대상자의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는¹⁾ 권한 있는 기관²⁾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①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불인정(단,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등 자국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주한 공관은 예외로 함)
 - ② 발급대상 국가 내 범죄경력 확인 기관이나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 (중국)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 (미국)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을 통하여 발급)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③ 기타

- * (캐나다) 캐나다 연방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이 발급하는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Checks, CRC)* 로 확인
- * CPC는 이름 기반 범죄경력증명서(Name-based criminal record checks)와 지문을 제출하여야 발급 가능한 범죄경력증명서(Certificated Crimial record checks)가 있으나, 이름 기반 범죄 경력증명서(Name-based criminal record checks)는 신원확인에 취약점이 있으므로 지문 제출 후 발급 기능한 범죄경력증명서(Certificated Crimial record checks)만 인정

2. 인증 절차

- O 아포스티유 협약57) 가입 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 (이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⁵⁸⁾

⁵⁷⁾ 정식 협약명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문서 발행국이 자국문서로 확인하면 협약 가입국은 추가적인 확인 없이 해당 문서를 자국에서 직접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협약임

- (이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이포스티유 확인

3. 유효기간

O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일 것

4. 제출시기 등 기타 사항

- O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원칙
 -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마. 해외 범죄경력에 따른 처리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u>특정 강력</u> 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방문취업(H-2) | 재외동포(F-4) | 영주(F-5) |
|------------------------------|-----------------------|-----------------|
|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u>불허</u> |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 O 사회적 중대 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마약, 보이스 피싱, 3회 이상 음주운전) 다음의 자격별 기준으로 처리

| 방문취업(H-2) | 재외동포(F-4) | 영주(F-5) |
|--------------------------------------|--------------------------------------|-----------------|
| 선고일로부터 <u>6년</u>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 선고일로부터 <u>7년</u>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 (협박, 공갈, 사기) 영주(F-5) 자격변경 불허

○ 기타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58) &#}x27;13.5.13.부 주중공관 사증발급 시 징구하는 범죄경력증명서 확인 절차 준용

| 방문취업(H-2) | 재외동포(F-4) | 영주(F-5) |
|-------------------------|-------------------------|--------------------------|
| 선고일로부터 <u>4년</u> 간 사증발급 | 선고일로부터 <u>5년</u> 간 사증발급 | 선고일로부터 10년 간 품행단정 |
| 및 자격변경 불허 | 및 자격변경 불허 |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신청자의 경우 협박, 공갈, 사기죄도 기타 범죄로 봄

사.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2. 3월 기준)

| 지역 | 국가 / 지역 | |
|-------------|--|--|
| 아시아, 대양주 |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 |
| 유럽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 |
| 북미 | 미국 | |
| 중남미 |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 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나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 |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 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 |
| 중동 |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 |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참고, 향후 가입국 변경 시 변경된 내용에 따름

별첨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동 기준은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사증발급·외국인등록 등 각종 체류허가 시 제출하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에 적용됨 (영주(F-5) 자격변경시 제외)

가. 제출 대상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나. 제출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21점 이상)59)
- O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 O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 O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2단계 이상)60)

다. 면제 대상

공통사항

- O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 면제대상 포함

⁵⁹⁾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한국어능력시럼(TOPIK) 점수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기준 적용)

⁶⁰⁾ 전체 교육부 한국교육원 변경 (19개국 43개원, 체류관리과-1499, 2022.02.17.)

- O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 O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 상을 졸업한 사람 및「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방문취업(H-2) 사증발급

O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 (H-2-7)

방문취업(H-2) 체류허가

- O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 (H-2-7)
- O 재외공관에 한국어 능력입증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취업 (H-2)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 O '19. 9. 2. 이전에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중인 사람은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면제

재외동포(F-4)

- O 만 13세 이하인 사람
-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O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F-4-30) 신청자

○ '19. 9. 2. 이전에 재외동포(F-4) 시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중인 사람은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면제

라. 처리 기준

O 사증발급 시

| 방문취 | 업(H-2) | 재외동포(F-4) | |
|-------------|--|-----------------------------|-----------------------------|
| 한국어능력 제출 | 한국어능력 미제출 | 한국어능력 제출 | 한국어능력 미제출 |
| 체류기간 1년 | <u>제출여부와 상관없이</u> <u>연</u> 의 사증발급 국어능력 제출 필 입력 | 체류기간 2년 의 복수사증 발급 | 체류기간 1년 의 복수사증 발급 |

O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 방문취 | 업(H-2) | 재외동포(F-4) | | |
|-------------------------------|--|--|---|--|
| 한국어능력 제출 | 한국어능력 미제출 | 한국어능력 제출 | 한국어능력 미제출 | |
| 체류허가시 최대 체류기간 3년 부여 | 등록,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u>체류기간 1년</u> 부여 |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최대 <u>체류기간 3년</u> 부여 | 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u>체류기간 1년</u> 부여 | |

별첨 3

방문취업제 취업 활동범위

가. 법적 근거

- O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나. 지정 방식

-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 허용업종 지정·나열(포지티브) 방식
- 서비스업*: 허용제외업종 지정·나열(네거티브) 방식
 - * 「서비스업 분류 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라 서비스업이란「한국표준 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17.7.1.)에서 16개 대분류(E, G~U)를 말함

다. 활동범위 기준

-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 한국산업분류 중 시행령 별표 1의2 제29 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2)에서 지정·나열한 산업 분야 허용**
 - ☞ 농업(소분류 3개), 어업(세분류 1개, 세세분류 1개), 광업(중분류 3개), 제조업(全 업종, 단,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건설업(전 업종,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회학 건설현장 업체 중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에 한함)
- 서비스업 : 한국산업분류 중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3)에서 지정·나열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제외하고 허용
 - ☞ 중분류 20개, 소분류 1개 허용 제외
 - ※ 단, 중분류 또는 소분류 단위에서 제외업종에 속하더라도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 있음

「표준직업분류표」산업분류체계는 대분류(알파벳 코드) → 중분류(2자리코드) → 소분류(3자리코드) → 세분류(4자리코드) → 세세분류(5자리코드)로 구성되어 있어, **허용이나 제외로 지정된 업종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허용되거나 제외됨**

(예시①) 소분류 업종인 '축산업'(012)이 허용업종이므로, 하위 세분류 업종인 '소 사육업'(0121)이나 '양돈 업'(0122) 등도 허용되며, 하위 세세분류 업종인 '젖소 사육업'(01211), '육우 사육업')01212) 등도 모두 허용

(예시②) 중분류 업종인 '수상 운송업'(50)이 허용 제외업종이므로, 하위 소분류 업종인 '해상 운송 업'(501)이나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502) 뿐만 아니라 세분류, 세세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허용 제외됨

라. 활동범위 세부내용

1.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허용업종 지정)

○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u>허용</u> (총 10개: 대 2, 중 3, 소 3, 세 1, 세세 1)

| | | 허용업경 | <u>\$</u> | | 사내서면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상 세 설 명 | | | | |
| | | ① 작물 재 배업(011) | 화훼작물, 경 여기에는 일 재배, 콩나들 2. 하위 일 곡물 및 기 (0112), 과 (0114), 시설 |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 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생산과 비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0112),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0113), 기타 작물 재비(0114), 시설작물 재배업(0115)의 5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 01. 농업 | ② 축산업 (012) | 1. 업종 설명 (소분류)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크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육지동물은 여객・화물 운송용, 경기 및 오락용,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구입한 육지동물을 판매과정에서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하위 업종 소 사육업(0121), 양돈업(0122),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0123), 기타 축산(0129)의 4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수수료 또는 는 산업활: 2. 하위 압 작물재배 : 업종과 그: 의 하위 소년 | 동을 말한다 1종 관련 서비스' 의 하위 세서 | 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 나. 업(0141),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2)의 2개 세분류 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중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013)과 '수렵 및 관 | | | | |
| | ☞ 대분류 . | | | |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 | | | |
| | 03. 어업 | 031. 어로 어업 | 0311. 해 수면 어업 | ④ 연근해 어업(03112) | 1. 업종 설명 (세세분류)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 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 |

| 허 용 업 종 | | | | | 상 세 설 명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ଟି ୩ ଅଟି | |
| | | | | | 2. 하위 업종 없음 | |
| | | 032. 양식 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 ⑤ 양식 어업(0321) | 해조류 등으 활동을 말한 2. 하위 업 |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이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 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한다. | |

☞ 어업(03)의 하위 업종 중 '연근해 어업'(03112), '어업 관련 서비스업'(0322)는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1. 업종 설명 (중분류)

⑥ 금속광

철 및 철 이외의 금속(비철금속)을 함유한 금속광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금속광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광물의 파쇄, 마쇄, 자성 및 중력에 의한 분리, 선별, 체질, 부유, 분말의 응집처리(입상, 구형상, 원통상 등), 건조, 배소, 자화 또는 산화하기 위한 하소 등과 같이 기본적인 화학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금속광물의 정광활동은 채광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포함된다. 우라늄 및 토륨 채굴 활동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철 광업(061), 비광철금속 광업(06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 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B. 광업 (05~08)

⑦ 비금속 광물 공업 연료용 제외

(07)

업(06)

1. 업종 설명 (소분류)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물을 제외한 비금속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토탄 채굴 활동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토사석 광업(071),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1. 업종 설명 (소분류)

광업 지원 서비 스업(08)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 탐사, 지질 조사 및 표본 채취, 채굴, 천공, 채취, 추출, 광산 배수 및 양수, 관련 장치물 설치・수리・폐기 등의 광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철 광업(061), 비광철금속 광업(062)의 2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대분류 B의 하위 중분류 업종 중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⑨ C. 제조업 (중분류 10~34)

1. 업종 설명 (대분류)

※ 단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 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 | 허용업 | 5 | │ ├ 상세설명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경 세 글 경 | | | |
| | (본금이 80억원 ! 경우에 한함 | 처리활동은 수공으로 이 2. 하위 업 | 제조활동으. 루어질 수 있 종 | 로 보지 않는 있으며, 생산된 | 마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틴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34) 및 그의 하위 세분류, 세세분류 모든 업종을 | | | |
| ☞ 대분 | 류 D 및 중분류 | 류 35(전기, 기 | 스, 증기 및 | 공기 조절 공 | 응급업)의 전 업종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 | | |
| (중분 ※ 단, 빌 석유호 건설요 산 업 | :. 건설업 류 41~42) 전소·제철소· 학 건설현장의 ば체 중 업종이 ·환경설비인 = 제외 | 설용지에 ² 수행하는 선 이러한 건설 직접 건설 공사 분야를 설활동으로 2. 하위 2 | 자기계정에 남종 건물 및 난업활동으로 혈활동은 도급 활동을 수행 별로 도급 또 본다. | 구축물을 신 서 임시건물, 급.자영 건설(하지 않더라! 는 하도급을 | 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 | | | |

2. 서비스업 (허용 제외업종 지정)

○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u>제외</u> (총 21개: 중분류 20, 소분류 1)

| | | 제 오 | 상 세 설 명 | |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정세결정 | | | |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채리, | ① 수도업 (36) | 1. 업종 설명 (중분류)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 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소분류 업종인 수도업(360)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인 생활용수 (3601/36010), 산업용수 공급업(3602/36020)을 포함한다. | | | | | | | |
| 원료 재생업 (36~39) | ②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 1. 업종 설명 (중분류) 오염된 건물, 토양, 지하수, 강, 바다, 호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 | | | | | | |

| | | 제 오 | l 업 종 | | 사내서면 |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상 세 설 명 | | | | | |
| 소분류 업종인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0)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 | | | | | | | | | | |
| | ☞ 대분류 E의 하위 업종 중 '하수, 폐수 및 분뉴 처리업'(37) 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재생업'(38) 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 | | | | | |
| G. 도매 및 소매업 (45~47) | ③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 으로서 자동 2. 하위 업 자동차 판매 | 중고 자동치 동차 매매 중 종 배업(451), 자 | · 대활동을 포함한다. ·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미 | 부품과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 배업(452),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է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 | G의 하위 업 있지 않음 | 종 중 <u>'도매</u> | 및 상품 중개업'(46)과 '소 | 느매업; 자동차 제외'(47)은 제외업종에 | | | | | |
| | · 10 - |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 | | | | | | |
| | | <u>단, '육상 여객 운송업'(492)은 허용한다.</u> | | | | | | | | |
| H. 운수 및 창고업 (49~52) | ⑤ 수상 운송업(50) | 1. 업종 설명 (중분류)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수상 운송장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해상 운송업(501),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50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 |
| | ⑥ 항공 운송업(51) | 1. 업종 설명 (중분류)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항공 여객 운송업(511), 항공 화물 운송업(51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 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 |
| | ⑦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 스업(52) | 2. 하위 업 보관 및 창 | 는 우주선 등 종 고업(521), 기 | | 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9)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 | | | | |

| | | 제 오 | 의 업 종 | | 사내서면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상 세 설 명 | | | | |
| | | ☑ 단,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한다. (1) 냉장・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 | | | | | | | |
| ☞ <u>대분류</u> | · I (숙박 및 · | 음식점업, 중 | 분류 55~56) | 는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 | 지 않음 | | | | |
| | ® 출판업 (58) | 1. 업종 설명 (중분류) 서적,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수행 활동과 판매에 활동이 포함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 창작물을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되며, 제공방식은 전통적인 인쇄물 방법 전자매체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질수 있다. 2. 하위 업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의 2개 2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u>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한다.</u> | | | | | | | |
| J. 정보 통신업 (58~63) | ⑨ 우편 및 통신업 (61) | | | | | | | | |
| | ⑩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활동과 고 ² 제공하는 선 2. 하위 업 소분류 업정 | 프트웨어를 7 백의 사업장이 산업활동을 ! | 네서 컴퓨터시스템의 관리 말한다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 및 운영관련 전문적.기술적 서비스를 및 관리업(620)과 그의 하위 세분류 | | | | |

| | | 제 오 | 의 업 종 | | |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상 세 설 명 | | | | | |
| | ⑪ 정보서 비스업(63) | 1. 업종 설명 (중분류)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 기타 정보 서비스(639)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G의 하위 업원 에 포함되어 | | <u> 2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u> | <u>급업'(59)과 '소매업; 자동차 제외'(47)은</u> | | | | | |
| | ⑫ 금융업 (64) | 금융자산에 회사 등이 2. 하위 업 은행 및 자 | 신 활동을 수 투자하는 <i>7</i> 수행하는 산' 종 축기관(641) | 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 업활동을 포함한다. | 하기관, 모집 자금을 유가증권 및 기타 그 외 공공기금 관리.운용기관과 지주 642), 기타 금융업(649)의 3개 소분류 함한다. | | | | | |
| K. 금융 및 보험업 (64~66) | ③ 보험및 연금업(65) | 1. 업종 설명 (중분류)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험 또는 연금기금을 모금,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보험업(651), 재 보험업(652), 연금 및 공제업(653)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 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 |
| | ④ 금융 및보험 관련서 비 스 업(66) | 1. 업종 설명 (중분류) 금융 또는 보험 및 연금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금융지원 서비스업(661),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66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 |
| L 부동산 업(68) | ⑮ 부동산 업(68) | 1. 업종 설명 (중분류)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를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2. 하위 업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 |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 ⑩ 연구개 발업(70) | 거나 이용 기 | !동은 자연과 가능한 지식을 | 을 통해 새로운 응용부문에 | 학 등을 대상으로 지식 축적을 증가하 적용하기 위한 창조적이고 체계적으로 D)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활동 | | | | | |

| | | 제요 | 의 업 종 | | |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상 세 설 명 | | | | | |
| | | 으로 분류된다. 2. 하위 업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 |
| | ⑦ 전문 서 비스업(71) | 법률 자문 자문 및 관 이러한 산업 2. 하위 업 법무 관련 / 조사업(714), | 1. 업종 설명 (중분류) 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 및 여론조사, 경영관련 계획 수립, 자문 및 관련 컨설팅 제공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은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2. 하위 업종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714), 회사본부, 경영컨설팅 서비스업(715), 기타 전문서비스업(716)의 6개 소분류 업 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
| 1. 업종 설명 (중분류) 연구개발 활동은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등을 대상으로 지식 축하기 이용 가능한 지식을 통해 새로운 응용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창조적이고 한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Frascati manual, OECD)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으로 분류된다. 2. 하위 업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의 한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대분류 (| 의 하위 업종 | 중 <u>'기타 전</u> | 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 | 73)'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 | |
| N. 사업시 설 관리, | ⑪ 사업시 설 관리 및 조경 서비 스업(74) | 1. 업종 설명 (중분류)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2. 하위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742),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743)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단,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 | | | | | | | |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 75. 사업지 원 서비스업 | 해용한다. 1. 업종 설명 (소분류) 고용주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고용에 관련된 인적사항 조사, 구인 조회 등 일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기관리 아래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특정인력을 일시적으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 그 인력을 제공하 그 대가를 직접 받아 그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 급료를 지불하는 형태 인력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2. 하위 업종 고용 알선업(7511), 인력 공급업(7512)의 2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념 | | | | | | | | |

| | | 제요 | 의 업 종 | | 사비서면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상 세 설 명 | | | | |
| | |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 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 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허용한다. | | | | |
| | | | | |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경비, 경호 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 |
| | ☞ 대분류 N | 시의 하위 업종 | 등 중 <u>'임대업;</u> | 부동산 제외(7)'은 제외업종 |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 |
| p. 교육 서비스 업(85) | (854), 일반 교습학원(855), 기타 교육기관(856), 교육지원 서비스업(857)의 7개 소분류 업종 고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 | | | | | | |

- 대분류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대분류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대분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대분류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대분류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대분류 U(국제 및 외국기관)(99)는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2.12.28.)에서 대분류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대분류 U (국제 및 외국기관)(99) 업종의 공공성, 주된 수행업무 등을 고려하여 방문취업(H-2) 제외업종에 추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3년 중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정임

[주의] <u>방문취업(H-2)의 취업활동은 가능업종의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u>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고 <u>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방문취업(H-2) 동포를 고용한</u> 경우에 한하며, 취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취업개시신고를 하거나 고용주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마. 시행일자 : 2023. 1. 1.

별첨 4

건강상태 확인서

E-9 / E-10 / H-2 자격 사증신청자 확인서

이 확인서는 대한민국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본인의 건강 및 심리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입국한 후에 체류허가의 취소 또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 1) | 성 명 | | 2) 생년월일 | |
|----|---|--------------|-----------------------------------|------------------------------|
| 3) | 국 적 | 4) 성 별 | 5) 여권번호 | |
| | 6) 귀하는 공중보건 예 □ (질환명: 매독, E | | 염성 질환에 감염되었습니 아니오 □ | 까? |
| | 7) 귀하는 최근 5년 중독된 적이 있습 예 □ (복용물질: | | ·질(마약류)을 복용한 적이), | 있거나 알코올 등에 아니오 \Box |
| | 8) 귀하는 과거 정신 ⁴ 예 □ (질환명: | 덕, 감정적 또는 신경 | 적 혼란으로 의사의 치료를), |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square |
| | 9) 최근 5년 이내에 예 🗆 (질환명 및 치료경 | , - | 배 등을 겪은 사실이 있습 ^니), | 니까? 아니오 □ |

<유의사항>

귀하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 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는 기초 법질서 교육을 이수하여야지만 외국인등록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대사 (총영사) 귀하

| 별첨 | 5 |
|----|---|
|----|---|

건강진단서

| 건강진단의료기관 | 관지정 번호 : | | | | | | |
|---------------------|----------|----------|-----------------|-----------|------|------|-------------------|
| 제 호 | • 1 | 건 강 7 | 진 단 🗸 | 서 | | | |
| 성 명 | | 생년 | 년월일 | | | | |
| Name | | Date | of Birth | | | | 사 진 (3cm× 4cm) |
| 한국 내 주소 | | 7.1 | 키비 중 | | | (| JCM X 4cm) |
| Adress in | | | 화번호 | | | | |
| Korea | | Phone | e Number | | | | |
| | | 검 사 | 내 | 용 | | | |
| 신 장 | cm 🕏 | | kg | 혈 | 압 | | |
| (교정)시력 ├── | | 색 신 | | (교정 |)청력 | | : () |
| ^구 결 핵 | : () (2 | 백 각) | 정신질 | ㅎL | | 우 | : () |
| 글 픽 매 독 | | | - 경연결 간염(HBs | | | | |
| | | 마약검 | | , ,,,, | | | |
| 필로폰 | 코카인 | 아편 | | 대마 | | 기타 | |
| 위와 같이 검사 | 하였습니다. | | | | | | |
| | | | | | 년 | 월 | 일 |
| | | | 거시 | 자(담당의 | | | (인) |
| | | | | AI(D 6 - | 171) | | () |
| | □ 양호 | <u> </u> | 불량 | | | | |
| 검 사 결 과 | 불량 소견 시 | 사유 | | | | | |
| 피검진자 체류에 대 한 의견 | | | | | | | |
|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 별도 첨부 | | | | | |
| 상기 피검진자의 | 기 건강상태에 | 대해 위와 | 같이 판정 | l하였음: | 을 증명 | 합니다. | |
| | | | | | 년 | 월 | 일 |
| | | | | | | | |
| | | <u> </u> | 의료기관의 | 장 | | | (인) |

별첨 6-1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영문)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Pledge of Non-Employment in (F-4) Restricted Occupations

※ 서약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2쪽 중 1쪽)

| | _ 0 | ты т т. (т томоо оолг | 0.000 | | | ,, (| 1 0 . 1/ |
|--------------------------------|-----|--------------------------------|-------|-----------------------------|----------------------------|---------------|----------|
| 성명 Name In Full | | | | 국 적 Nationality | | 성 별 Gender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 |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 | | 여권 유효기? Passport Expiry | ZE Date | |
| 대한민국 안의 주소 Address In Korea | | | | | | | |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8-70호, 2018.3.26.)에서 정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직업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I hereby pledge that I will not engage in employment activities in occupations restricted for overseas Korean (F-4) status holders as prescribed in the Announcement of Scope of Restrictions on Job-Seeking Activities for Overseas Korean (F-4) Status (Ministry of Justice Notification No. 2018-70, March 26, 2018)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1)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3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7-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I confirm I have been informed that violation of this pledge can lead to punishments including imposition of fines and permission to extend the stay not being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Act.

※ 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로서 시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임 Yet, overseas Korean (F-4) status holders in the regional-specialized visa pilot regions who have already applied for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tay are excluded.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l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a public servant in charge under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If Disagree', the applicant him/herself should submit all the related documents.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바우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seal Spouse of applicant signature/seal Father/Mother of applicant signature/seal

별첨 6-2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중문)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旅外同胞(F-4)在韩不从事限制范围内职业的声明书

※ 서약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请用韩文或英文填写。(2쪽 중 1쪽/第1页共2页)

| | - 1 11 11 11 2 4 7 4 2 | ·> ·> · · · · | . 1/2/4-24/4-24 | • • | |
|--------------------|----------------------------|---------------|------------------|----------|--|
| 성명 姓名 | | 국적 国籍 | | 성별 性别 | |
| 생년월일 出生日期 | | 휴대전화 手机号码 | | | |
| 여권번호 护照号码 | 여권 발급일자 护照签发日期 | | 여권 유효기 护照有效期3 | 간 Ē | |
| 대한민국 안의 주소 在韩住址 | | | | | |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8-70호, 2018.3.26.)에서 정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직업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上述本人保证,按照大韩民国《出入国管理法》第18条第1款、《出入国管理法施行令》第23 《出入国管理法施行规则》第27条之2的规定,绝不从事《关于限制持旅外同胞(F-4) 条第3款、 滞留资格人员在韩就业范围的告示》(韩国法务部告示第2018-70号, 2018年3月26日)中规定的对持旅外同 胞(F-4)滞留资格人员限制的就业范围之内的职业。

本人已被告知, 如有违反, 按韩国《出入国管理法》有关规定, 将会受到违规罚款处分、不予 延长滞留期限等处罚。

※ 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로서 시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임 但是,居住于地区特殊类签证试验区的旅外同胞(F-4滞留资格)提前申请办理滞留资格外活动许可的除外。

> 년/年 월/月 일/日

신청인/申请人:

(서명 또는 인/答或章)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大韩民国00出入国外国人厅 (事务所、办事处)长 启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信息共同使用同意栏)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本人同意。按照大韩民国《电子政府法》第36条规定,相关负责公务员在办理本业务的必要范围内共同使用行政信息用于查阅并确认相关负责公务员所 需确认事项。

*若不同意, 申请人需要亲自提交相关材料。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 怒或章 申请人配偶 申请人 签或章 申请人父或母 签或章

【붙임 10】수령증

수 령 증

성 명: 외국인등록번 호 : (생년월일) 국 적: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 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으며, 활동 제한사항 및 이유가 기재된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본인은 허가조건 및 제한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제한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 허가조건 |
|-----------|-----------------------------|
| 지역우수인재 |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
| 외국국적동포/가족 |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 |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붙임 11】 체류 허가 취소 통지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신설 2020. 9. 25.>

체류 허가 취소 통지서

NOTICE OF REVOCATION OF PERMISSION OF STAY

| _발행번호 (No | |
|---|-------------------------------|
|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 성 명: Name in full: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
|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 취소 내용 Details of Revocation | |
| 취소 사유 Reasons for Revocation | |
| 적용 법조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

1.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귀하의 체류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 68조에 따라 강제출국 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This is to notify that your permission of stay has been revoked pursuant to Article 89 of the Immigration Act, and that you may be subject to deportation under Article 46 or 68 of the same Act.

- 2. 귀하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the above disposition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after receipt of the disapproval notice.

* You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nline (www.simpan.go.kr) an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Internet (ecfs.scourt.go.kr)

면 월
Date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장 직인

CHIEF, OO IMMIGRATION OFFICE

일

취업 제한 분야

- O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O「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영업
- O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 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 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O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 1. 시설형태
 -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 2. 설비유형
 -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 3. 영업형태
 -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그 목차